
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최형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95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5. 13.

발 의 자 : 최형두 · 김예지 · 이준석
성일종 · 서지영 · 서범수
김대식 · 신성범 · 곽규택
우재준 · 정성국 · 최보운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,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기금 또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각각 「방송통신발전 기본법」과 「정보통신산업 진흥법」에 따라 방송통신 및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임에도 불구하고, 방송 내용 심의·불법정보 유통 심의 등 행정규제 직무를 수행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경비 등에 사용되고 있어 기금의 설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을 국고로 일원화 하고, 방송통신발전기금·정보통신진흥기금 등 산업 진흥 목적 기금을

예산 항목에서 삭제하여 해당 기금이 본래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9조).

법률 제 호
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국고에서”를 “국고에서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9조(예산) 국가는 <u>다음 각 호</u> <u>의 기금 또는 국고에서</u> 심의위 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1. 「<u>방송통신발전 기본법</u>」 제 <u>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</u> <u>금</u></p> <p>2. 「<u>정보통신산업 진흥법</u>」 제 <u>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</u> <u>금</u></p> <p>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<u>는 기금</u></p>	<p>제29조(예산) -----<u>국고에서</u>- ----- ----- -.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